

제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0%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료는 변경 적용된다.)
 -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한길데이케어(주간보호) 입소안내 2026년

전화 팩스		731-0038 732-5509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암 1길 47				
구분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초과	20일 (8시간)	본인부담 15%	25일 (8시간)	본인부담 15%	식비 (1식)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1,394,600	209,190	1,743,250	261,488	3,500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1,291,800	193,770	1,614,750	242,213	간식 (1일2회)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1,192,800	178,920	1,491,000	223,650	700원*2회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1,160,200	174,030	1,450,250	217,538	
5등급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1,127,200	169,080	1,409,000	211,350	
연지 지원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12월>		676,320	101,448	
입소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 공단 발급서류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공단 발급서류 <수급자희망급여 주야간보호>									
	3. 복지용구 확인서 - 공단 발급서류									
	4. 신분증 사본 - 대상자									
	5. 건강진단서(법정전염병 여부 확인을 위함)									
	6. 약 처방전(투약관리 해당자에 한함)									
준비물	실내화, 여벌옷, 속옷, 기저귀(해당자에 한함) - 요실금 팬티									
비고	1.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수가 중 본인일부부담금 수가만 연달정산 가능합니다. (비급여부분 식대는 현금영수증처리)									
	2. 매월 입소비는 다음달 10일까지 입금하셔야 센터 운영이 원활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무료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3조										
*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 추가산정										